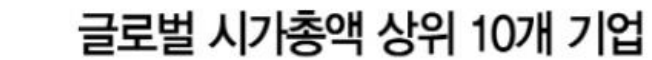

개정 데이터 3법과 Data 거래에 관한 쟁점

2020. 7.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변호사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빅데이터’보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1,053
---------	-------

애니메이션 943

아마존닷컴 879

알파벳 825

버크셔해서웨이 497

페이지 447

텐센트 396

JP모건체이스 351

존스앤드존스 339

네슬레 334

YULCHON
律村
YULCHON
YULCHON

법무법인(유)
율촌

시와 “Big Data”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통하여 데이터 학습”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음향, 영상 등을 처리**

[Data Privacy 보호 조치 필요]

- ✓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 ✓ 목적 외의 용도 이용 금지
- ✓ 개인정보 가명화 / 익명화 처리
- ✓ 개인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3법 관련 동향

데이터 3법 개정 현황

2018. 11. 15.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 2019. 11. 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률안
- 2019. 11. 29.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 2019. 12. 4.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



데이터 3법 2020. 2. 4. 공포, **2020. 8. 5일자로 시행** 예정



시행령 2020. 3. 31.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신용정보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규정안 변경 예고(2020. 6. 3.),
데이터 3법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는 법 시행(2020. 8. 5)에 맞추어 마련 예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판단 기준 명확화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함.
(해석 상 법 적용을 배제하던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판단시 고려 요소 명확히 함.

나.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시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는 가명정보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

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하도록 함.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

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 도입: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익명처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추정
-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와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나. 상거래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 **일반 상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자료제출요구·검사권·출입권·시정명령·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 신용정보업(CB)을 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전문CB 포함),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 세분화하여 진입규제 요건 완화

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사업)**의 도입

-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 자문·일임업 등 겸업 허용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

마.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서 단순화·시각화
- 평가등급 함께 고지

바.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자동화평가 대응권 도입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및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기초자료 등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신용정보회사등, 신용정보 이용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누출·변조·훼손된 경우 신용정보주체 손해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데이터 활용에 대한 환경의 변화

KBS NEWS

2020-05-25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 열흘 만에 65건 거래

금융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 데이터거래소에서 출범 열흘 만에 60건이 넘는 데이터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맞춤형 광고 제작을 위한 카드 소비 데이터, 지역별 카드 소비 데이터, 지역단위 소득·지출·금융자산정보 등이 유료로 거래된 정보들입니다.

금융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출범 열흘 새 16개 회사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혀 총 회원사는 46곳입니다. 금융회사가 24곳, 비금융회사 22곳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한 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참여가 잇따랐으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의 데이터 거래도 활발한 편입니다.

비금융사 중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LG유플러스, 티머니, 빅밸류, 이스트시큐리티 등이 회원사로 참여 중입니다.

노컷뉴스

2020-06-03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빅데이터 '빅뱅' 일으킬까?

**| 기재부 "빅데이터 쪽 빅뱅 일어날 것" 공언
"데이터 거래소 구축도 검토"**

3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35조 3000억 원,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안 사전 브리핑을 열었을 때 취재진의 관심을 끈 표현이 '빅데이터 빅뱅'이었다.

안도걸 예산실장은 "빅데이터 쪽에 '빅뱅'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발언했다.

'빅데이터 플랫폼'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사업은 '데이터 거래소'다.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추세를 살피 가면서 원활한 데이터 거래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비 5억 원을 3차 추경에 배정했다.

MK
매일경제 MBN

2019-12-18

첫걸음 댔 데이터경제..."1400종 데이터 상품·17종 서비스 개방"

**| 민간 첫 데이터거래소 KDX 등...플랫폼 10곳
성과 보고회**

민간 첫 데이터거래소인 한국데이터거래소(KDX)를 비롯해 올해 총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란 주제로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 출범 초기에는 가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 작업 비용, 데이터 활용 기대 수익 등을 산정 기준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5일 이후에는 판매자가 요청할 경우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 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 및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9.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ww.msit.go.kr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에 온전히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보도일시	2019. 9. 6.(금) 석간(온라인 9. 6. 0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9. 5.(목) 14:00	담당부서	융합신산업과
담당과장	임정규(044-202-6140)	담당자	김동일 사무관(044-202-6143)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22개소 센터 선정

- 금융 및 통신 등 10개 분야 플랫폼 및 94개소 센터 선정 완료 -
- 6개소 센터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공모 과제 선정을 위해 8월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빅데이터 센터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분석·유통하고 혁신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과기정통부는 분야별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데 3년간 총 1,5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총 64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 *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거쳐 2~3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 플랫폼(240억=24억×10개소), 센터(400억=4억×100개소)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에 10개 분야 플랫폼 및 72개소 센터를 선정하였고, 28개소 센터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지난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개 분야 37개의 공모 과제를 접수*받아, 분야별 평가 및 종합평가 등 2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2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금융위원회, 2020. 1. 21.>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	2020.1.21.(화) 8:00	배포 2020.1.21.(화)
책임자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2100-2620)	담당자	김 영 민 사무관 (02-2100-2625)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심장 권 민 수(02-3145-7850)		김 재 호 팀장 (02-3145-7830)
	금융보안원 보안전략본부장 김 영 전(02-3495-9004)		조 규 민 부장 (02-3495-9660)

제 목 : '안전한 데이터 유통' 금융 분야가 선도하겠습니다.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20.3월 시범운영 예정) 및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 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
-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성점인 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20.3월 예정)하고, 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

1 추진 배경

- 금융분야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 *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중 Banking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18. IDC)
-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6.3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 구축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3법 개정(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 이에 따라, 생태계의 구성원인 데이터 수요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의 협의회 구성·운영

<금융위/금융보안원, 2020. 5. 11.>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	2020.5.11.(월) 15:00	배포 2020.5.11.(월)
책임자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2100-2620)	담당자	김 영 민 사무관 (02-2100-2625)
	금융보안원 보안전략본부장 김 영 전(02-3495-9004)		임 구 락 센터장 (02-3495-9900)

제 목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1 개 요

- 금융보안원은 '20.5.11.(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운영)'를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5.11.(월) 15:00~16:00, 포시즌스호텔(서울)
- (행사 취지) 빅데이터 산업 주요 플랫폼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기념
- (주요참석자) 금융위(부위원장),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 SKT 등
- (주요내용) 축사, 시범거래, MOU 체결(금융 데이터 유관기관, 금융보안원-SKT) 등

-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同 행사에서는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5개 유관기관) 및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금융보안원-SKT)를 체결하고,

- * (대상)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내용)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

- ** (내용)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

-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총 13건)도 발표하였습니다.

- *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

데이터 거래의 법적 쟁점

1. 데이터 거래 대상

거래 대상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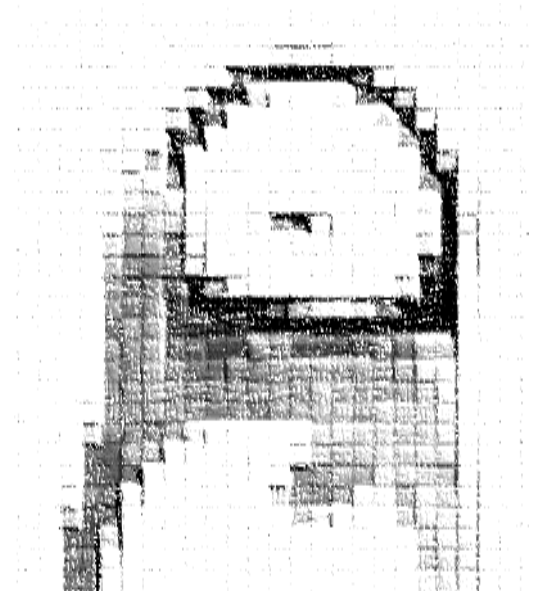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예시

이름	생년 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	-----	------	------	----	----	----	------------	-----

개인(원본)정보	홍길남	67년 1월3일	010-9999-3333	055-747-0088	055-2345-6789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함포동 12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	45,896,789
----------	-----	-------------	---------------	--------------	---------------	--------------------------	------	------------------	-----------	------------

* 이름, 생년월일 등을 삭제하고 핸드폰 번호를 암호화하였으나, '창원시 마산구에 주소를 둔 국회의원'이라는 극소수 사람에 관한 정보로 개인 식별 가능

가명정보 예시 (잘못된)	- *삭제	- *삭제	Ajeejkc93 *암호화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범주화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	45,896,789
------------------	----------	----------	-------------------	----------	----------	-----------------------	------	------------------	-----------	------------

* 사실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식별 불가능.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가능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

가명정보 예시 (제대로 된)	- *삭제	- *삭제	Ajeejkc93 *암호화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범주화	- *삭제	배우자 아들1 딸1	4,567,900	45,896,789
--------------------	----------	----------	-------------------	----------	----------	-----------------------	----------	------------------	-----------	------------

*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익명정보 예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구 *범주화	- *삭제	가족 3명	400만원 ~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	----------	----------	----------	----------	----------	-----------------------	----------	-------	-----------------	---------------------

“개인정보”의 거래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개인정보



데이터 거래를 위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획득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신용정보법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활용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4조의2(안)

- 당초 수집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 개인정보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
- 추가적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
- 가명처리를 하여도 목적 달성 가능할 경우에는 **가명처리**

상기 요건 모두 충족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

신용정보법

법 제32조 제6항
제9의4호

-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상기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동의 없이 제공 가능

EU GDPR

Recital 50, Article 6

- 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상황
-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 개인정보의 성격
-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결과



**암호화, 가명조치 등
적절한 안전 조치**

Determine whether ‘the processing is compatible with the purposes for which the personal data were initially collected’ or not by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factors

“가명정보”의 거래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가명정보



이번 Data 3법 개정의 핵심: 법령상 정한 목적으로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1항 제1호 및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의 거래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다음 범위에서는 “가명정보”의 거래 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개인정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신설>

“개인신용정보”

상업적 목적을 포함

통계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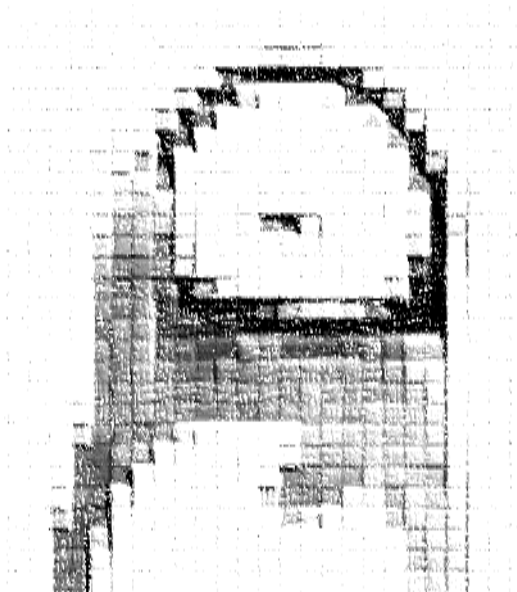
산업적 연구를 포함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익명정보”의 거래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익명정보



익명정보의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개인인 신용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거래 시 법적 유의 사항

데이터 거래 주체

그룹사
데이터 거래

국내 그룹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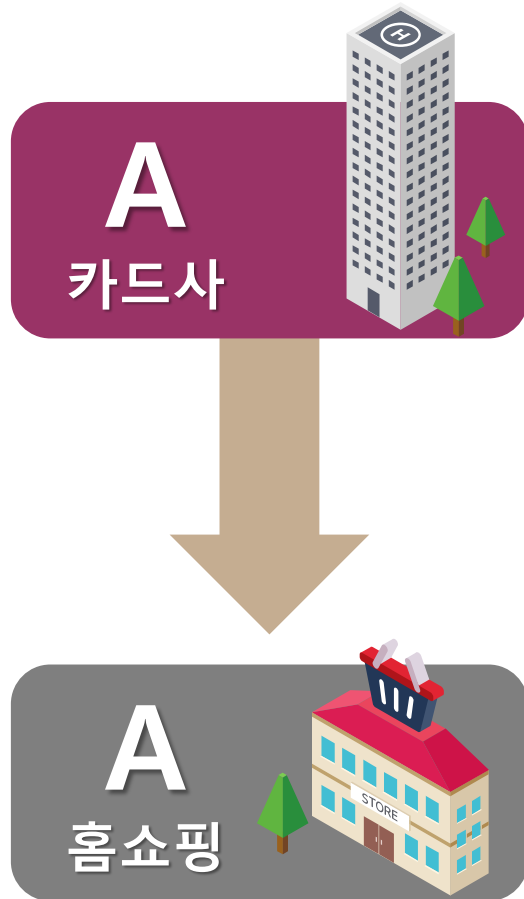
해외 그룹사

그룹사 외
데이터 거래

타법인(제3자)

수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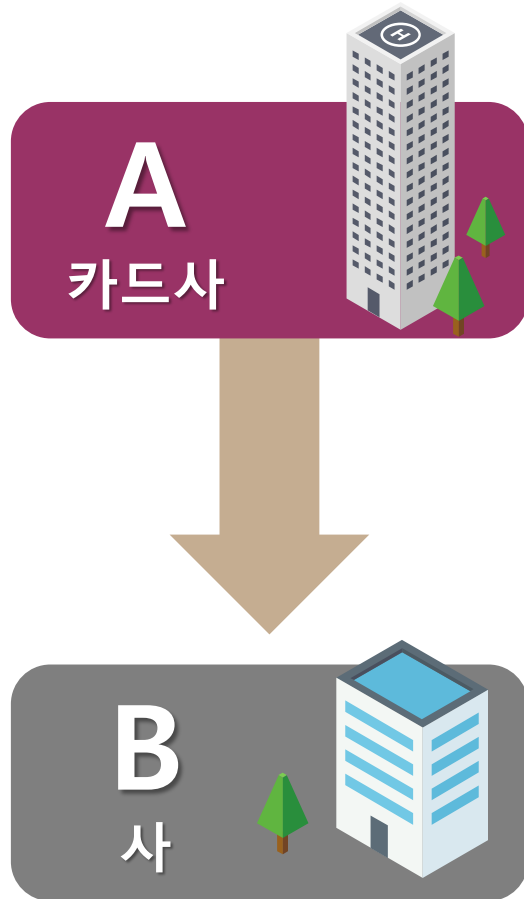
계열사간 데이터 거래 시 유의 사항



그룹내 계열사간 데이터 거래시 유의사항

- ☑ 제공 계약서 상 재식별 금지 및 위험시 통지
- ☑ 제공 계약서 상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
- ☑ 공정거래 및 조세 이슈
- ☑ 해외 거래일 경우 현지 법령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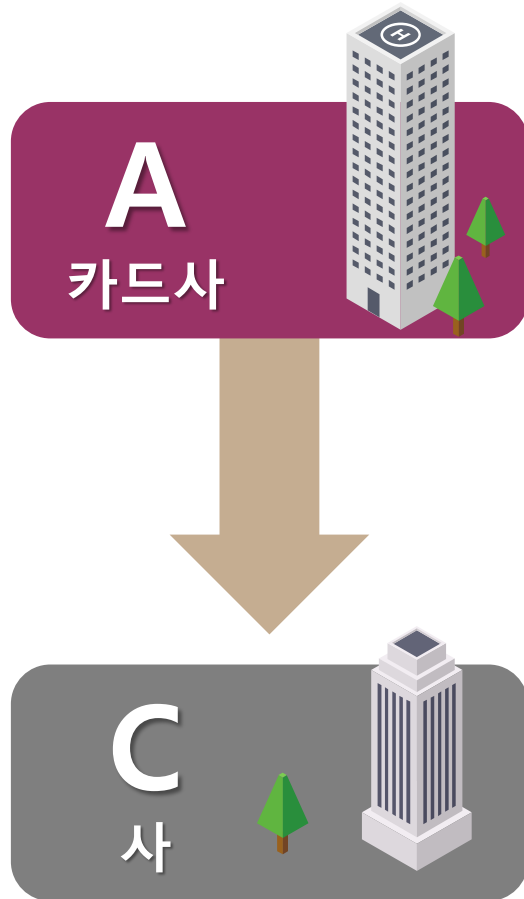
타법인과 데이터 거래 시 유의 사항



타법인과 데이터 거래 시 유의사항

- ☑ 제공 계약서 상 재식별 금지 및 위험시 통지
- ☑ 제공 계약서 상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
- ☑ 제공 계약서 상 재식별 위험 시 통지
- ☑ 사전 Data Set의 검토에 특히 유의

수탁사와 데이터 거래 시 유의 사항



수탁사와 데이터 거래시 유의사항

- ☒ 위·수탁 규정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
- ☒ 제공 계약서 상 재식별 금지 및 위험시 통지
- ☒ 제공 계약서 상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

3. 데이터 결합 시 법적 유의 사항

데이터(가명정보)의 결합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개발에 활용



[결합을 위한 협의 사항]

전문기관 선정

임시대체키 식별자/알고리즘

활용 범위

제공 또는 가공 여부

보유기간

수수료 등

데이터(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시행령(안)

-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후 결합전문기관 내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 **처리**가 원칙, 반출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 후 반출

- ✓ 원래 보유한 정보와 반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지
- ✓ 반출정보의 처리 목적과 환경에 비추어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이 적정한지
- ✓ 데이터 성격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정성 및 **반출 목적 달성 후 파기** 계획이 적정한지

- 세부적인 가명정보 결합 방법 및 절차는 고시에 반영 (5월 중 행정예고)

데이터(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법 제17조의2

-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데이터(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 제29조의2

- ③ 결합신청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이하 “분석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결합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4조의2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데이터(가명정보) 거래 시 안전조치

가명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제3자 제공 시 제공 받는 자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시행령(안) 제29조의5

-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 보호하기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추가 정보 별도 분리 보관, 접근 권한 분리
- 가명정보 또는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및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명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데이터(가명정보) 거래 시 안전조치

가명정보 보호를 위한 제재조항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 (과징금 부과 등)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75조 (과태료)

7의2. 제28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데이터(가명정보) 거래 시 안전조치

가명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재조항 [형사처벌]

제71조(벌칙)

- 가명정보 처리: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가명정보 결합: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 금지: 제28조의 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벌칙)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제2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데이터(가명정보) 거래를 위한 활용 시 보호 장치 마련



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의무 이행

-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별도 보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 가명정보 처리시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

(처리 목적,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 등 처리 내역)

국가별 데이터 거래소 사례

한국: 데이터 진흥원 데이터스토어

데이터 거래소 개요

참여자	• 150개(중소기업중심)
구축기간	• 2012년 DB스토어로 시작하여, 2014년 데이터스토어로 확대
거래데이터 및 상품	• 데이터진흥원 데이터스토어에는 50억개 이상의 데이터 기업일반, 부동산, 교육, 금융/증권 등 총27개 분류 체계 7,224건의 데이터 상품 제공 • 상품유형 파일, 오픈 API, 이미지

데이터 거래소 주요 기능

- 플랫폼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등재 후 상호거래
 - 공공, 개인 및 개방 데이터 셋의 거래
- 거래 규모
 - 누적 7억 (2015년 이후), 연 3억 규모
-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가격산정, 데이터 법률상담, 데이터 매칭을 통합하여 '데이터 비즈원'으로 시범 서비스 중
-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성 중
- 데이터
 - 소셜플랫폼, 복지시설분포, 수질현황 등 "생활일반"분야
 - 지도, 주소명, 행정경계 등 "지도/지리"분야가 전체데이터의 43 이상임.

중국: 귀양 빅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거래소 개요

참여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하이얼, 차이나 유니콤, 신화망, 마오타이, 교통은행, 중신은행 등 약 2,000개 회원사 (그 중 225개 기업이 판매회원으로 빅데이터 소스를 제공하고 있음)
규모	국유자본 36%, 약 84억 투자
거래데이터 및 상품	- 금융, 소비, 기업, 세관, 전자상거래 등 총 30개의 분류 체계로 4,120건의 데이터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상품유형으로는 API, Data Terminal, Online, 파일 데이터 총 4종류가 있음 - 금융데이터 16.7%, 소비분야 8.9%임

데이터 거래소 주요 기능

- 거래소는 데이터 권리확립, 가격책정, 지수, 거래, 결산, 지불, 안전보장, 자산관리 등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함
- 거래 규모
 - 누적 1.2억위안 (약 205억원)
- 현재 북경 및 상해에 운영센터가 있으며, 산서성 및 섬서성 등 지역의 거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발표
- 주로 계약에 근거하여 내외부 전문가 및 기술자 활용하여 위탁받은 회원사의 데이터를 추출·가공 판매

일본: J-DEX(JAPAN DATA Exchange)

데이터 거래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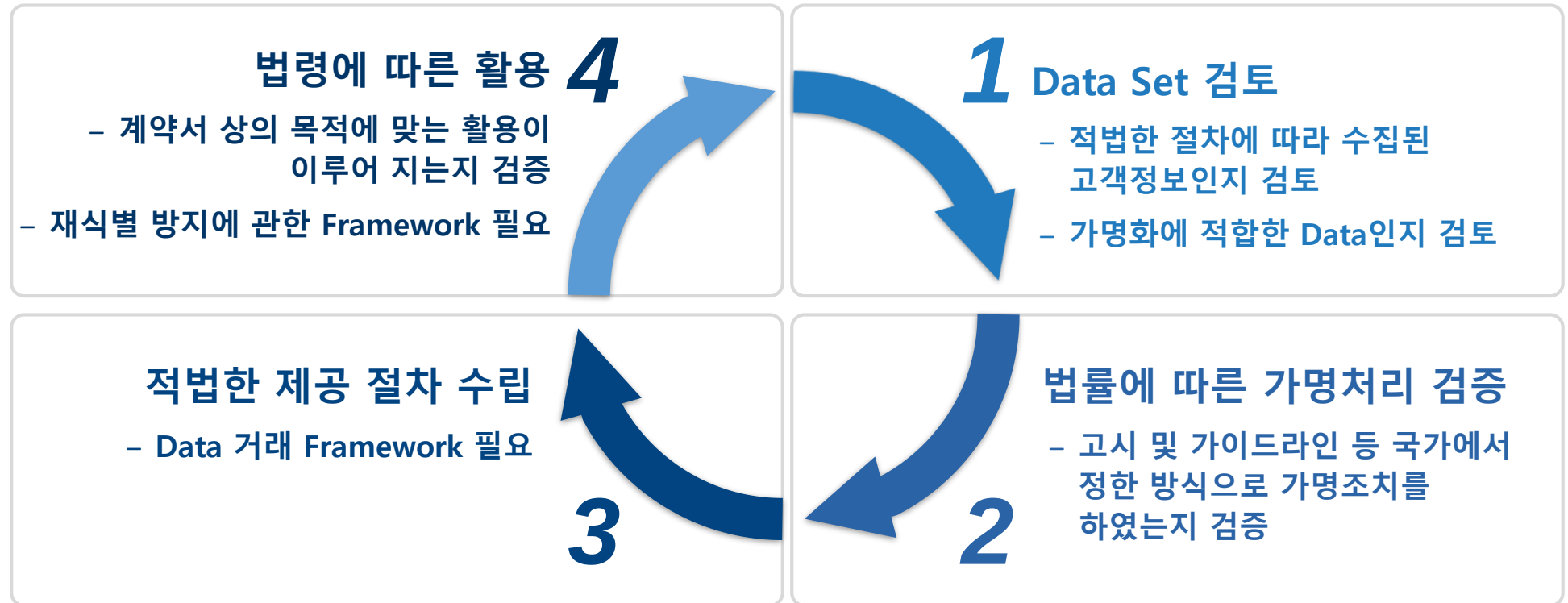
참여자	• JTB(일본여행사) • 인터넷기업 Data Intelligence, Data Section 등
규모	• JPY 21 million(약20억)
거래데이터 및 상품	• 주유소에서 보내는 정보를 모은 자동차 연비데이터, 직업속성에 따른 가구 구매 데이터, 의료기관 위치정보 데이터 • API, 파일 등 제공 • 기업 내외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컨설팅

데이터 거래소 주요 기능

- 기업 간의 데이터 거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검색 기능, 상담 기능, 결제 기능 등을 제공하는 법인 한정 데이터 거래시장 서비스임
- 관광업체 등 정보를 구입하는 업체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가격협상을 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음
- 개인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사용을 제어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 데이터 카다로그는 16개 분야(출산, 교육, 주택 등) 1~2개월 마다 업데이트됨

데이터 거래를 위한 준비

데이터 거래 라이프 사이클 관리



데이터 거래의 Compliance 필요성

선관주의 의무 이행 요건 식별 및 이행체계 재정비

-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통한 Legal Risk 최소화
- CEO, CISO, CPO 등 주요 직급별 이행체계
- Legal Risk 분배를 통한 위험전이 방지

선제적 선관주의
의무 이행 체계
마련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Governance 체계
기반 정비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Control Tower로서
그룹 Governance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정비

- 그룹사 또는 회사 공통 적용을 위한 통제체계 마련 및 배포
-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Control Tower 역할 정립
- 국외 법인 및 지사를 고려한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Governance 체계 마련

내부통제, 정보보호 및 준법감시 체계 등에 대한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운영 실태 파악

- IT/보안/법률 전문가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수준에 대한 객관적 실태 점검

現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운영 실태 파악

Legal Risk
최소화를 위한
사후 대응체계
수립

빅데이터 컴플라이언스
Legal Risk 식별 및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수립

- 실태 점검을 통해 도출된 주요 위험요소 개선
- 사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주요 사고 시나리오 도출 및 대응절차 마련

결론

데이터 거래의 Compliance 필요성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대응 전략 필요

☑ 법률이 정한 데이터 거래 체계 수립·운영



☑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 거래 사업 진출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운영을 위한 'Big Data Compliance' 수립 필요

감사합니다



손도일 변호사

E. dison@yulchon.com

T. 02.528.5836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Unit 03, 4th Floor, MPlaza Saigon,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3911-0225 Fax: +84-28-3911-0230 E-mail: hcmc@yulchon.com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24-3837-8200 Fax: +84-24-3837-8230 E-mail: hanoi@yulchon.com

중국 (상해 사무소)

031, 30F, Hang Seng Bank Tower, 1000 Lujiazui Ring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20, PRC
Tel: +86-21-6089-3159 E-mail: shanghai@yulchon.com

미얀마 (양곤 사무소)

#6-#7, Level 4, Uniteam Training Office Building, No.84, Pan Hlaing Street, Sanchaung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7537-088 Fax: : +95-1-7537-088 E-mail: yangon@yulchon.com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7-495-510-5200 Fax: +7-495-510-5228 E-mail: moscow@yulchon.co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The Energy, 32nd Floor, SCBD Lot 11A,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Tel : +62-21-2978-3888 Fax : +62-21-2978-3800 jakarta@yulchon.com